

자격증 정보 입력 방법

【 수첩형 자격증 】

국가기술자격증

주 의 사 항

-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주소와 취업중인 사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 대여하거나 이종 취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.
- 국가기술자격이 취소·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
① 자격번호
 성명
 ② 자격종목
 생년월일
 주소
 ③ 합격연월일
 교부연월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 소장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

【 상장형 자격증 】

관리번호:

국 가 기 술 자 격 증

① - 자격번호:
 ② - 자격종목:

· 성 명:
 · 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③ - 합격 연월일:
 · 발급 연월일:

본 국가기술자격증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·발급함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【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】

한국산업인력공단

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

취득인번호:
 관리번호:

성명: [③] 생년월일:
 주소:
 ② ① 자격종목: [] 합격일자: [] 취득 당시 경력년: []

자격취득 사항

경력정보 사항	자격종목	직분 종류	직분일	직분내용

인력정보 변경내역	변경종목	변경년	변경주	변경일자

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2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합니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※ 확인서는 인력정보를 변경할 때만 발급되며, 최초 발급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합니다.

구 분	입 력 방 식
① 자격번호	숫자11자리와 알파벳1자리로 구성 (숫자0과 알파벳O 유의)
② 자격종목	자격증명
③ 합격연월일 (합격일자)	자격증 합격일 (자격증 교부연월일, 발급연월일이 아님)